

(우)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http://www.kma.org]/전화(02)6350-6560 / 전송(02)790-8911
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고영옥(6572) / 팀원 이승아(6560) / E-mail: kma6571@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8900호

시행일자 2024. 11. 1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요양기관업무포털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 11. 7.)

2. 상기 근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급여 인정 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관련 항목이 일부 확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진료 시 참고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비스 개요 : 인정횟수가 정해진 항목의 환자별 인정횟수 정보 조회 가능

나. 대상 항목

행위(9항목)	[24년 신규] 약제(3항목)
① HbA1C 검사	① Denosumab 주사제(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② Sodium hyaluronate 20mg(히루안플러스주 등) ③ Sodium hyaluronate 25mg (하이알주 등)
② 골밀도 검사	
③ 당화알부민 검사	
④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⑥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	
⑦ 상복부 초음파 검사	
⑧ 하복부 초음파 검사	
⑨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	

다. 접속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상단메뉴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1부.
3.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1부.
4.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화면 사용설명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